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Product L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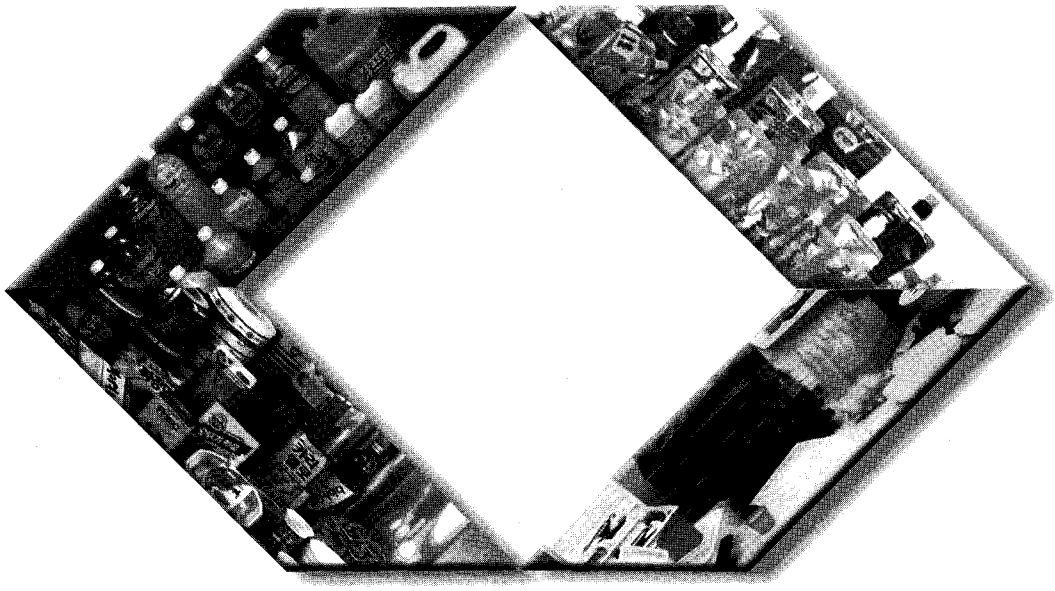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 각 정책기관을 비롯, 전자 · 자동차 · 식품업계에서는PL 대비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정부와 소비자 및 각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문제를해결하는시민의모임
한국식품공업협회
제일제당(주)
LG전자(주)
태평양화장품

PL 대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PL Counter Plan of Government

지건중 / 산업자원부 PL팀 사무관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현행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으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2-1. 제정경위

입법추진 배경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제출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 일에 공포되었고 2002년 7년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미국('63), EC지침('85), 일본('95), 중국('93), 러시아 · 필리핀('92)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이미 제조물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 주요내용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법 제2조제1호). 여기에서 동산이라 함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부동산 이외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

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 대여 등)한 자도 보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표 1〕 미국의 PL 주요사례

판결년월 법원	피고회사 (제품)	평결 내용	사고내용과 원고의 주장
1963.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YuBa사 (다목적 전동공구)	6.5만 달러	작업중 갑자기 나무조각이 기계로 부터 튕겨 나와 얼굴에 중상을 입음 최초로 제조업자의 엄격 책임을 인정
1973. 연방항소법원	11개사 (석면)	5.8만 달러	공업용 단열처리 작업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흡인하여 폐암에 걸림. 제조업자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 의무가 있음
1982. 10 연방대법원	H공업 (경자동차)	배상금 582.5만 달러	대형차와 충돌로 운전중이던 여성이 하반신불구가 됨. 충돌시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2. 11 텍사스주 지방법원	Y사 (오토바이)	화해금 700만 달러	다른 차와 충돌할 때 가솔린탱크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어 보행불능이 됨
1983.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N사 (자동차)	화해금 700만 달러	뒷차에 추돌되어 후부좌석에 던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3.10 플로리다주 항소심	T사 (자동차)	화해금 700만 달러	충돌시 연료탱크의 뚜껑이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숨졌음
1984. 워싱턴주 항소심	Y사 미국법인 (오토바이)	화해금 700만 달러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해를 입음
1986. 4 텍사스주 지방법원	H공업 미국판매자회사 (1인용차)	화해금 700만 달러	1인용 차가 뒤집어져 동승자가 하반신마비가 됨. '2인 승차금지' 라는 라벨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
1994. 엘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다우코닝사 등 (실리콘)	화해 다우코닝사 등 3사가 40억 달러 기금 설립	다우코닝사 등이 제조 공급한 가슴성형용 실리콘 주머니가 파열되어 피해 - 12,000건의 소송이 제기 *1992년에 FDA는 사용제한조치, 다우코닝사는 제조중지

(법 제5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법 제6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하고,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법 제7조).

3. 산업자원부 PL 대책

3-1. 추진배경

2000년 1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제조업자는 제품안전성 제고 및 손해배상 문제해결 등 상당

〔표 2〕 일본의 PL 주요사례

제 품	소송가액	피고	사건개요	제소시기
제설장치	5,124만엔	파이프(Pipe) 가공회사	제설 장치의 결함으로 파이프 선단부분의 눈이 녹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클레임.	1996. 8
베이컨 (Bacon)	95만엔	식품제조회사	경품으로 받은 베이컨을 먹은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킴(화해).	1996. 11
학교급식	7,770만엔	지방자치제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으로 사망	1997. 1
성게	3,300만엔	식품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성게에 붙은 균이 원인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음식점으로부터 소송(청구 기각).	1997. 2
합성세제	70만엔	제조회사	부엌용 합성세제를 사용중 손 끝 감각이 없어짐(화해).	1997. 4
주차장 리프트(Lift)	1,815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주차장 경영자	입체 주차장에서 리프트에 깔려 사망(메이커 이외 당사자와 화해, 메이커에 대한 항소는 취하).	1997. 5
귀 미용용품	60만엔	수입판매업자	귀 미용용품을 사용해 귀에 염증 발생(화해)	1998. 1
소프트웨어	1,170만엔	컴퓨터프로그램개발회사와컴퓨터리스회사	컴퓨터의 처리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세금의 초과 지불 발생	1998. 6
봉합실	4,960만엔	수입판매회사	수술에 사용되어진 봉합실이 파손되어 출혈로 사망	1998. 7
한방약	8,160만엔	수입판매회사	한방약 복용후 만성 위부전 발생	1998. 10
곤약젤리	6,000만엔	제조회사	곤약젤리가 목에 걸려 사망	1998. 10
에어백	2억1,096만엔	수입판매회사와 수리회사	자동차의 에어백이 갑자기 튀어나와 손가락 골절	1998. 11
전기포트	2,000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넘치려 해서 뚜껑의 개폐 레버에 손을 대었더니 뚜껑이 떨어지고 포트가 넘어져 화상	1998. 12
베이비 슈즈 (Baby shoes)	104만엔	제조회사	매직테이프(Magic tape)가 떨어져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짐.	1999. 5

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등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해 9월이래 PL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3-2. 그 동안 PL대응 추진 상황

3-2-1. PL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

산업자원부에서는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업종별단체 임원 등이 참여하는 PL대책협의회를 구성(2001년 9월 13일) 중소기업청, 업종별단체 등 PL관련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PL 대응업무 총괄추진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3-2-2. 제품안전기준 정비

2001년 7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 2000년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각각 개정하여 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거를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 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등 안전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3-2-3.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

199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PL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PL보험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보험료보다 20~30%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3-2-4.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한편, 지난해 7월~ 9월(중소기업청 주관), 금년 4월~5월초(산업자원부 주관)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PL법 해설, 정부 지원시책, 기업 대응요령 등을 설명함으로서 PL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또한, PL 홍보용 책자 제작·배포(3종 78,000부), PL 시스템 구축 자금지원 우대(2001년 4월),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2001년 4월) 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3. 향후 계획

3-3-1. 업계 PL 홍보 및 정보제공 지속 추진

각 기업의 PL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대책을 마련해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① PL 가이드북(5만부),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2만개) 제작 배포

② 정부 시책설명회 및 중소·밴처기업 CEO 교육시 PL 대응 교육

③ 업종별 PL 세미나 등 홍보활동 지속 추진

④ 인터넷 홈페이지(산업자원부,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중기진흥공단)를 활용한 PL 정보제공

3-3-2. 업종별 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설치

PL 분쟁발생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제조업자와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단체에 자체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여 PL 상담·알선, 분쟁조정 및 사고정보수집·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 준비중인

분야는 자동차, 전자, 전기, 화학, 생활용품, 가스 · 석유기기, 기계 등이다.

3-3-3. PL 단체보험 활성화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진단 및 예방 · 방어대책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PL 교육 및 보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3-3-4. PL대응 지원활동 지속 추진

한편, PL 대응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PL 전문가 양성교육(4박5일) 지원(중소기업 직원(3,000명) : 교육비의 50%, 지원기관 및 단체(100여명) : 전액)

② PL 대응 매뉴얼 개발 · 보급(가전, 화학제품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등)

③ 업종별 Group 형태의 PL 컨설팅 지원(100개 업체 소요비용의 60%)

④ 사내 PL 대응체제 구축 등 적극 대응기업에 대한 포상 및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최고경영자에 대한 PL 대응 분위기 조성

⑤ P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보완, 시험 · 검사설비 도입 등 추진시, 자금 우선지원(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표 3〕 PL관련 기관

관련기관	PL 추진업무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 PL 지원시책 종합추진 ·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 · 개정(기술표준원)	(02)2110-5293 (02)509-741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PL대책 추진 - PL 시스템 구축자금 우대 - 제품의 안전성제고 기술지원등	(02)503-7928
중소기업 진흥공단	· PL 컨설팅 · PL 시스템구축 실무, PL전문가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02)785-6159
한국표준협회	· PL 컨설팅 ·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등 교육과정 운영	(02)369-827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PL 보험운영	(02)2124-3084

4. 기업의 PL 대응방안

최근 소비자권익 보호제도의 확충으로 이미 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되기 시작했으며, 완성품 제조업자는 물론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도 PL 주체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제품의 안전대책이 주요 기업경영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기업은 제품의 법적 안전기준 만족은 기본이고 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4-1. PL예방대책

4-1-1. 인식전환

PL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로부터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 사원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안이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법규제나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또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비용보다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응이 결과적으로 비용최소화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4-1-2. 대응체제 구축

제조물책임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사 및 각 공장마다 제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세부규칙과 매뉴얼 정비, 나아가서 전 사원에 대한 PL법의 내용 · 대응방안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품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결함있는 제품을 출하한 기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설계에서부터 제품안전이 반영되도록 하고 제조과정 및 지시 · 경고 등 제품의 마무리 작업에서도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친 제품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2. PL방어대책

4-2-1. 사고 확산 및 재발 방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PL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고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원상담창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사내에 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

〔표 4〕 PL 관련 업종별단체

관련단체	분야	전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02)366-1890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	(02)553-0941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가스석유기기	(031)480-298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제품	(02)3476-0271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완구 · 생활용품	(02)856-5623(110)
한국정밀화학공업협회	화학제품	(02)784-032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계	(02)369-7810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승강기	(02)501-0544

고 클레임(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2-2. 리콜체제 정비

리콜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리콜을 실시하여 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정보의 피드백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동일 사고의 재발방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2-3. 소송대응체제 및 조기화해 제도를 확립

소송대응체제 및 조기화해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PL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송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재판외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와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물책임 및 리콜보험을 활용하여 손해위험을 분산시켜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그 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